

□ 건설공사 불법행위 유형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처분청 : 도·시군 건설업등록부서]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건설업 미등록 및 부정 등록	건설업자 업종별 건설업 미등록, 기준미달, 부정 등록 ※ 종합 5천만원 미만, 전문 1천 5백만원 미만 공사, 의무 없음	제9조 제1항	제83조 등록말소(부정등록) 제95조의2 5년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미변경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번호, 국적 예외) 건설업 양도, 상속은 제외	제9조의2 제2항	제100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의 교육 미이수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관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나 미이수	제9조의3 제1항	제9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미달	제10조	제83조 등록말소 or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미등록 건설업 표시광고의 제한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업종을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한	제11조	제97조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발주자 미통보 및 계속공사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포괄승계인은 처분 내용을 발주자(수급자)에게 알려야 하나 미통보	제14조 제2항	제9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무자격자 시공 (공사를 도급받은 자)	종합·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시공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무자격자 시공	제16조	제82조 영업정지(업체의 등록된 면허에 처분)
건설업의 양도 등	건설업의 양도, 합병 등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제17조	제96조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 시공·대여·알선공모	제21조 제1~4항	제83조 등록말소(대여) 제95조의2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의 벌금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국가기술 자격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가 자격증, 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건설업등록 기준이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1조의2	제82조 영업정지(위반) 제95조2 5년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이하의 벌금
도급계약의 원칙 위반 (원·하도급사)	당사자간 도급계약을 체결 시 금액, 공사기간 등을 서명 후 상호 보관하여야 하나 위반	제22조 제2항	제99조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보험료 의무 위반	건설공사대장 신규, 변경내용을 30일 이내 미통보(4천만원 이상 공사) 4대보험료 기재, 정산위반	제22조 제6~7항	제81조, 제99조 시정명령 및 500이하 과태료(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제81조, 제82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보험료 정산의무 위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 관리실적 의무 위반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보유 현황, 재무 등 거짓으로 제출	제23조 제3항 제23조의2 제2항	제82조 영업정지(시공능력위반)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이하의 벌금(사업실적 허위 제출)
수급인들의 자격제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원도급사)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나 위반	제25조 제2항	제82조 영업정지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제31조(입찰참가 제한) 제31조의2(하도급액의 30%이하 과징금)
직접시공 의무제 위반	70억 미만 건설공사는 다음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 하여야 하나 위반 · 3억미만 50%, 10억미만 30% · 30억미만 20%, 50억미만 10%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82조의제2항제2호 1년 이내 영업정지 or 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직접시공 위반) 제9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으나, 일괄하도급 계약체결	제29조 제1항	제82조제2항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or 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제한(7~1년 1개월미만)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제29조 제2항	제82조제2항제3호 1년이내의 영업정지 or 도급액의 30%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3~5개월 미만)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발주처 승인 없이 다시 하도급	제29조 제3항	제82조제2항제3호 1년이내의 영업정지 or 도급액의 30%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하도급 내용 미통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수급인이 전문공사 재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미이행	제29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4호 6개월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99조제5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통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 제한(5~7개월 미만)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재하도급 지시 및 관리 의무위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하도록 지시 하거나 알고서 묵인 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9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획서 (변경)발주처 미제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할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미이행 ※ 적격심사와 다른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변경승인 받지 않은 경우	제31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제9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제한(1~3개월 미만)
하도급대금 (기성·준공금) 미지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제34조 제1항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교부 ※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 시 보증서 미교부	제34조 제2항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이하 과징금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선급금 미지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함	제34조 제4항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제36조 제1항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이하 과징금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수급인이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	제38조 제1항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이하 과징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3~5개월 미만)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 부당제한 특약요구 금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	제38조 제2항	제81조제4호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9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이하 과징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7개월~1년1개월 미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민간사업자)가 위법행위 고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행위를 한 수급자에게 주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38조의3	제96조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자의 미배치	<p>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인을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품질안전상 지장이 없거나 공사 중지중인 경우라도 발주처 승인 없이 미배치 한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347 1630 813 2078"> <tr> <td>700억미만</td> <td>500억이상</td> <td>300억이상</td> </tr> <tr> <td>기술사</td> <td>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 (5년)</td> <td>기술사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 (3년)</td> </tr> <tr> <td>100억이상</td> <td>30억이상</td> <td>30억미만</td> </tr> <tr> <td>기술사기능장 기사(5년), 산업기사 (7년) 특급기술자 (3년)</td> <td>기사(3년), 산업기사 (5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년)</td> <td>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3년)</td> </tr> </table>	700억미만	500억이상	300억이상	기술사	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 (5년)	기술사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 (3년)	100억이상	30억이상	30억미만	기술사기능장 기사(5년), 산업기사 (7년) 특급기술자 (3년)	기사(3년), 산업기사 (5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년)	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3년)	제40조 제1항	제81조 시정명령 제97조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00억미만	500억이상	300억이상													
기술사	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 (5년)	기술사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 (3년)													
100억이상	30억이상	30억미만													
기술사기능장 기사(5년), 산업기사 (7년) 특급기술자 (3년)	기사(3년), 산업기사 (5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년)	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3년)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건설기술자의 무단이탈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현장 무단 이탈	제40조 제2항	제100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공사내용 미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을 현장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나 미이행	제42조	제81조 시정명령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미교부	건설기계대여계약 합산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미이행 ※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	제68조의3	제81조 시정명령 제82조 1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2천만원 이하 과징금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처분청 : 도·시군 건설업등록부서, 건설기계 관리 부서]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미작성	당사자간(건설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22조 제1항	제44조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하도급계약서 미체결, 계약서 미발급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을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 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미이행	제3조 제1항 ~ 제4항	제25조 시정조치 제25조의3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나 미이행	제3조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지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거짓작성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하도급 거래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제3조	제25조의3 제1항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강요하는 경우	제4조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제1항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원도급사의 물품 등의 강제 구매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장비·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	제5조	상동
선급금 미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이자 미지급	제6조	상동
부당한 위탁(하도급 계약)의 취소	원사업자가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 또는 인수거부 지연하는 행위	제8조	상동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결재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원사업자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1조 제12조	상동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	제12조의2	상동
기술자료 제공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	제12조의3	상동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 등)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 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제13조	상동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 미이행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나 미이행	제13조의2	상동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미이행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직불합의 한 때, 하도급대금을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이 직접 지급을 미이행 하는 경우	제14호	상동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원도급사가 설계변동 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나 미이행	제16조	상동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미 협의	제16조의2	상동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제7조	상동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가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제19조	상동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 고용노동부]

구 분	주요내용	법령근거	처분근거 및 내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사항을 명시(변경사항포함)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	제17조	제114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자 업무내용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법 제24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지급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제43호	제109호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대장 미작성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기재 관리 하여야 하나 미작성	제48조	제116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